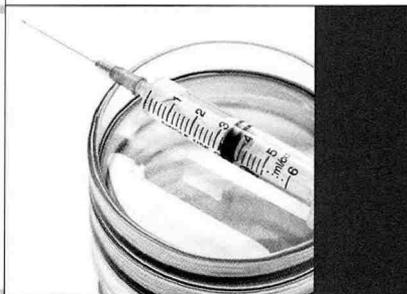


〈첨부자료 1〉

「수의사 연수교육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의사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연수교육업무를 본회가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의 명칭) 수의사법 제34조의 수의사연수교육을 본회에서는 임상수의사연수교육 (이하 “교육”)이라 칭한다.

제3조 (교육대상)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모든 수의사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기관, 교육기관 등 본회가 인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위원회) ① 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06. 2. 8〉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다음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의 의결주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3〉

1. 교육의 연간 실시 계획

2. 교육의 과목 및 교재개발

3. 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
4. 교육으로 같음하는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종목과 이수시간의 결정
5. 위탁 교육의 과목과 내용에 대한 인정여부
6. 기타 교육에 관하여 대한수의사회장이 위임한 사항

제6조 (위탁 실시) 제3조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31〉

1. 대한수의사회(시·도지부 포함)
2.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
3. 대한수의사회장이 인정하는 수의관련학회
4. 대한수의사회장이 인정하는 수의학교육기관, 수의업무관련단체 및 업체

제6조의2 (온라인교육) 제6조의 교육기관 중 대한수의사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07. 10. 26〉

제7조 (교육시간) ① 교육의 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하고, 당해연도 신규개업자·신규종사수의사(이하 '신규개업자'라 한다.) 및 폐업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7조의2에 의한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31, 2005. 2. 3, 2007. 10. 26〉

1. 신규개업자 : 당해연도 7월 이전 개업자는 5시간이상, 7월이후 개업자는 면제
2. 폐업자 : 당해연도 7월 이전 폐업자는 면제, 7월이후 폐업자는 5시간 이상
3. 다만, 당해연도 상반기에 신규개업하고 하반기에 폐업하는 경우와 당해연도 하반기에 신규개업하고 차기연도 상반기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의 교육은 면제한다.〈신설 2007. 10. 26〉

② 대한수의사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연수교육시간을 경감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2. 국외에 체류할 경우
3. 기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제1항의 및 제2항의 각호 1에 해당할 경우 교육대상자는 지체없이 대한수의사회(시·도지부 포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필수교육) 제3조의 의한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개업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수의사

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5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2개소 이상의 동물병원을 개설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수의사회의 교육을 각각 5시간이상씩 이수하여야 한다.

〈제정 2002. 1. 31, 개정 2007. 10. 26〉

제8조 (교육의 과목 및 내용) 교육의 과목 및 내용은 수의사가 습득하여야 할 사항 및 새로운 진료 지식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 (교육계획 수립) 수의사연수교육은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수의사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제9조의2 (교육계획의 보고) 각 시·도지부는 당해연도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7. 10. 26〉

제10조 (수강신청) 교육 대상자는 교육의 주관자 또는 수탁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신청을 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료증 교부) 교육의 주관자 또는 수탁자는 수강자의 수강 상황을 평가하여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12조 (보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완료 후 30일 이내에 본회에 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이수자 명단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31, 2007. 10. 26〉

제13조 (교육의 유예) 〈삭제 2002. 1. 31〉

제14조 (경비) ①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실비를 수강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장소·교육내용·교육방법 등은 지부실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는 대한수의사회(시·도지부포함)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교육비는 매년 3월까지 대한수의사회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결과보고) ① 교육실시 결과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